

韓國炭礦勞動의 分析

丁 炳 然

<目 次>

第 1 章	豫備의 考察
第 2 章	炭礦勞動의 構成과 異動
第 3 章	勞動時間과 作業內容
第 4 章	勞動賃金
第 5 章	炭礦勞動의 生産性·災害 및 厚生

第 1 章 豫備的 考察

(1) 大韓石炭公社 企劃部의 試算에 의하면 1961 年의 韓國의 에너지의 供給構成은 다음 表 1 과 같다.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無煙炭礦業은 567 萬미터톤의 에너지를 國內에서 供給함으로써 輸入에너지를 包含한 總에너지의 30.5%를 차지하였고, 이것은 原始系에 속하는 薪炭·穀草에너지를 除外한 現代系 에너지供給量의 71.0%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 無煙炭礦業은 韓國의 에너지 供給의 近代化, 國產에너지의 增大 및 海外依存度의 減縮을 위하여 分析되어야 할 가장 重要한 國內의 에너지産業이다. 本 報告書의 目的은 이와 같이 國內에너지의 大宗이 되는 韓國無煙炭礦業의 實態를 특히 그 勞動經濟의面에서 考察하는데 있다.

表 1. 韓國의 에너지構成, 1961年

	國 產 에 너 지			輸 入 에 너 지			合 計 (A + B)	薪炭·穀草	總에너지
	無煙炭	水 力 發 電	小 計 (A)	有煙炭	石 油 類	小 計 (B)			
量(無煙炭換算 1000M/T)	5,670	443	6,113	307	1,563	1,870	7,983	10,635	18,618
構 成 比 (%)	30.5 (71.0)	2.4 (5.5)	32.9 (76.5)	1.6 (3.9)	8.4 (19.6)	10.0 (23.5)	42.9 (100.0)	57.1	100.0

石炭 15號, 大韓石炭公社, 1962年 12月, p.5 에서 따옴.

(2) 韓國産業銀行은 商工部와 共同主管下에 1960年 12月 31日 現在 全國의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를 調查報告하였고(鑛業 및 製造業 事業體調查 綜合報告書, 1961), 保健社會部는 1961年 8月 31日 現在의 全國事業場의 勞動實態와 1962年 8月 31日 現在의 全國事業場의 勞動實態를 調查發表하였다(1961年度 事業場 勞動實態 調查報告書 및 1962年度 事業場 勞動

實態調查報告書). 이들 報告書에 의하면 從業員이 5名 以上인 韓國石炭礦業의 事業場數와 勤勞者數는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報告書에 發表된 石炭礦業의 實態

事業體數	勤勞者數	基準日	報告書名稱	報告機關	備考
102	24,536	1960. 12. 31	鑛業 및 製造業 事業體調查 綜合報告書	韓國產業銀行	從業員 5名以上
139	20,197	1961. 8. 31	1961年度 事業體 勞動實態調查 報告書	保健社會部	"
149	24,416	1962. 8. 31	1962年度 事業體 勞動實態調查 報告書	保健社會部	"

만일 兩調查機關의 세가지 報告數字를 第一次의 接近으로서 比較한다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1年 5月 16日의 軍事革命을 포함하는 32個月間에 石炭礦業의 總事業體數는 約 48% 增加하여 149개로 된데 反하여, 勤勞者數는 1960年 12月 末부터 1961年 8月 末까지 8個月間에 約 18% 減少하여 20,197名으로 되었다가 그다음 1962年 8月 末에 이르는 1個年 동안에는 約 21% 增加하여 24,416名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石炭을 採掘하는 零細事業場은 山間僻地에 散在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稼動狀況의 把握이 不明確하고 調查方法이 相異한 것이므로 以上에서 論한 趨勢는 正確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無煙炭을 主로 하는 韓國의 石炭事業場 總數는 大概 100~150이고, 이에 從事하는 勤勞者總數는 大概 2萬~2萬5千名 程度로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3) 韓國의 炭礦勞動에 관한 本 分析報告書는 ① 保健社會部가 1962年度 事業場 勞動實態調查報告書의 作成을 위하여 1962年 8月 31日 現在로 調查蒐集한 全國事業場 勞動實態調查票 및 勤勞者賃金實態調查票 中에 포함된 無煙炭事業場의 모든 調查票와 ② 保健社會部가 1962年度 全國鑛業體 賃金實態調查 集計報告書 作成을 위하여 1962年 5月을 基準月로 하여 調查蒐集한 賃金實態調查票 中에 포함된 無煙炭事業場의 모든 調查票를 分析의 基礎資料로 삼고, ③ 本人이 1963年 3月 5日 부터 10日間 江原道 炭礦地帶를 實地 踏査한 結果와, ④ 其他 大韓石炭公社, 商工部 및 產業銀行 등에서 入手한 資料를 利用하여 韓國의 炭礦勞動의 構成 및 勞動條件 등을 分析하기로 한다.

(4) 保健社會部の 1962年 8月 31日 現在 全國事業場 勞動實態調查票와 勤勞者 賃金實態調查票 中에서 無煙炭礦業으로 分類되는 調查票는 각각 95枚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1962年 8月 末의 從業員 5人以上의 韓國의 無煙炭事業場數를 95個로 볼 수 있음을 表示한다. 表 2에서와 같이 同一한 調查票에서 集計한 保健社會部の 數字가 149個로 增加된 것은, 첫째로 直接的인 生産事業場 外에 都市所在 本支店도 각각 獨立된 事業場으로 셈하고 있고, 둘째로 無煙炭礦業에 從事하는 事業場 뿐만 아니라 少數의 土炭·褐炭등을 採掘하는 事業場도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로 多數의 調查票를 短期間에 整理하려 할 때에 따르는 分類集

計員들의 事務的 錯誤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商工部가 各 無煙炭事業場으로부터 接收한 生産月報에 의하더라도 1962年 8월에 生産實績이 있는 것으로 報告된 炭礦數는 99個여서 우리의 數字와 거의 一致하고 있다. 그러므로 95個 無煙炭事業場을 基礎로 하는 分析結果는 韓國의 全無煙炭礦業에 대한 一般的 結論의 性質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5) 調査事業體 95個의 地域別分布를 보면 表 3과 같이 그 過半數인 51個가 江原道에 集中되어 있고, 그 다음은 겨우 12개의 慶北이며, 全南과 忠北은 11個로 각각 3位를 차지하고 있다. 事業場이 하나도 없는 곳은 要素賦存이 없는 慶南·濟州·서울市·釜山市 등이다. 그리고 이中에서 大韓石炭公社 傘下에 있는 6個 事業場은 國營이고, 이것을 除外한 나머지 89個事業場은 民營에 屬한다.

表 3. 調査事業場의 地域別 分布(1962. 8. 31)

地 域 名	서울市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江原	濟州	釜山市	計
事 業 場 數	0	1	11	6	3	11	12	0	51	0	0	95

(6) 大規模인 國營炭礦이나 이에 비길만한 몇個의 大規模 民營炭礦에 있어서는 換氣와 排水施設이 近代化 되고 礦員들은 蓄電된 쾰 라이트(cap light)와 防塵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動力을 利用한 炭車와 選炭施設을 利用하고도 있지만, 採炭幕場까지의 坑木運搬이 타든가, 發破 및 流炭作業 등에는 主로 人力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群小民營炭礦에서는 換氣와 排水가 不完全한데다가, 礦員들은 舊式安全燈과 原始的 道具를 가지고 거의 人力에 의하여 採炭과 運搬에 從事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의 無煙炭事業場에 從事하는 勞動의 構成 및 勞動條件은 規模가 작고 施設이 貧弱하며, 따라서 生産性이 낮은 群小民營炭礦으로부터 近代化된 大規模의 國·民營炭礦에 이르기까지 그 規模에 따라서 여러가지 특이한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韓國의 無煙炭事業場을 勤勞者規模에 따라서 다음 表 4와 같이 6個集團으로 分類하기로 하였다.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勤勞者數가 5人以上 49人以下인 39個의 事業場을 集團 I, 勤勞者數가 50人 以上 99人 以下인 20個의 事業場을 集團 II, 勤勞者數가 100人 以上 199人 以下인 14個의 事業場을 集團 III, 勤勞者數가 200

表 4. 韓國無煙炭事業場의 勤勞者規模別 分類(1962. 9. 31)

集團名稱	勤 勞 者 規 模	事業場數	集團名稱	勤 勞 者 規 模	事業場數
I	5~49人	39	IV	200~499人	10
II	50~99人	20	V	500~999人	6
III	100~199人	14	VI	1,000~4,365人	6
計					95

人 以上 499 人 以下인 10 個의 事業場을 集團 IV, 從業員數가 500 人 以上 999 人 以下인 6 個의 事業場을 集團 V, 從業員數가 1,000 人 以上 4,365 人 以下인 6 個의 事業場을 集團 VI이라고 各各 부르기로 한다.

第 2 章 炭礦勞動의 構成과 異動

(1) 表 5 는 1962 年 8 月 31 日 現在 韓國의 無煙炭礦業의 事業場數와 勤勞者數를 勤勞者 規模別·經營形態別로 比較한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1,000 名 以上の 勤勞者規模를 가지는 大事業場 6 個가 모두 石公傘下의 國營事業體이며 이 國營事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數는 都合 11,035 名으로서 國·民營을 合친 總勤勞者數 23,429 名의 거의 切半(49%)에 該當한다.

表 5. 規模別·經營形態別 事業場數 및 勤勞者數(1962. 8. 31)

集 團	從業員規模	經營形態別	事 業 場 數		勤 勞 者 數	
			實 數	構成比(%)	實 數	構成比(%)
I	5~49人	民 營	39	41	1,031	4
II	50~99人	//	20	21	1,369	6
III	100~199人	//	14	15	2,033	9
IV	200~499人	//	10	11	3,466	15
V	500~999人	//	6	6	4,495	19
VI	1,000~4,365人	國 營	6	6	11,035	47
合 計			95	100	23,429	100

그리고 民營의 事業場은 89 個로 全事業場의 93.7%를 차지하지만 그것에 從事하는 勤勞者數는 事業場別로 5 名에서 999 名까지 넓은 範圍에 分散하고 있고, 모두 國營事業場의 勤勞者數에 未達일 뿐 아니라, 總數에 있어서 12,394 名으로서 無煙炭礦業의 總勤勞者數의 約 53%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韓國의 無煙炭礦業에 있어서는 6 個의 國營事業場의 勤勞者가 89 個의 民營事業場의 勤勞者數에 거의 肉迫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特히 勤勞者數가 50 名 未滿인 民營事業場數가 39 個로서 全事業場數의 41%에 이룬다는 事實은 韓國無煙炭礦業의 零細性을 端的으로 表示하고 있다.

(2) 無煙炭事業場에 從事하는 全 勤勞者 23,429 名의 性別構成은 男子 22,741 名에 대하여 女子 688 名으로서 그 構成比는 各各 97.1%와 2.9%이다(表 6). 韓國産業銀行이 發行한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 調査 綜合報告書에 의하여 計算하면 1960 年 12 月 31 日 現在 韓國의 金屬鑛業從業員의 男女別 構成比는 89.2%와 10.8%이고, 製造業의 그것은 64.7%와 35.3%인 것에 比較하면, 다른 産業에 있어서 보다도 韓國의 無煙炭産業에 從事하는 女子勤勞者의 男子勤勞者에 대한 比重이 極히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88 名의 女子勤勞者는 雇傭形態別로 常傭者 641 名, 日傭者 47 名으로 區分되므로 그 大部分은 常傭者인 셈이다. 다음

表 6. 炭礦勤勞者의 性別構成(1962. 8. 31)

集 團	男	女	合 計
I	1,027	4	1,031
II	1,318	51	1,369
III	1,985	48	2,033
VI	3,383	83	3,466
V	4,360	135	4,495
VI	10,668	367	11,035
合 計	22,741(97.1%)	688(2.9%)	23,429(100%)

에 常備女子勤勞者 641 名은 거의 모두 選炭作業에 從事하는 生産勤勞者 479 名, 事務職從事者 42 名, 雜役勞動從事者 120 名으로 構成되고 그 比率은 각각 74.7%, 6.6%, 18.7%이다. 우리는 炭礦勞動에 있어서도 韓國의 女子勞動의 大部分은 事務職보다도 生産勞動인을 發見한다. 그리고 表 7에 의하면 事業場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日傭女子勤勞者는 減少하고, 常備女子勤勞者는 急激하게 上昇하게 되는데 이것은 事業場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性別分業이 어느정도 可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表 7. 雇傭形態別, 職種別 女子勤勞者數(1962. 8. 31)

集 團	常 備				日 傭	計
	生産勞動	事 務	雜 役	小 計		
I	3	1	0	4	0	8
II	38	0	1	39	12	51
III	32	0	0	32	16	48
IV	70	3	0	73	10	83
V	109	10	11	130	5	135
VI	227	28	108	363	4	367
計	479	42	120	641	47	688

(3) 表 8은 10 年을 級間隔으로 하여 勞務職과 事務職을 포함하는 全勤勞者의 規模別 年齡構成을 보인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어떤 集團에 있어서나 30~39 歲의 階級에 屬하는 勤勞者가 가장 많고(38.9%~50.6%), 全規模平均으로는 43.2%이다. 그리고 20 歲 부터 50 歲에 이르는 勤勞者는 全 勤勞者의 95% 以上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들이 年齡別로 分散되는 정도는 事業場의 規模가 적어짐에 따라서 더 커지는 傾向을 가지고 있고, 특히 勤勞者數가 100 名 未滿인 零細事業場에서는 60 歲 以上の 高齡者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直接 生産에 從事하는 生産勤勞者의 年齡別構成은 어떤가? 다음 表 9는 1962 年 12 月 31 日 現在 石公傘下 6 個 鑛業所와 石公本社 및 其他事業所(林務所, 出張所 등)의 生産勤勞者에 대한 年齡別構成을 보인 것이다. 이 表의 勤勞者中에는 集團 VI의 勤勞者 以外에 本社 및 其他事業所의 勤勞者 340 名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그 數字는 總勤勞者數 11,300

表 8. 炭礦勤勞者の 年齡別 構成(1962. 8. 31)

集團名	13~19歲	20~29歲	30~39歲	40~49歲	50~59歲	60歲以上	計
I	4 (0.4%)	330 (32.0%)	402 (38.9%)	251 (24.3%)	41 (3.9%)	3 (0.3%)	1,031 (100%)
II	30 (2.1%)	486 (35.5%)	550 (40.1%)	288 (21.0%)	14 (1.0%)	1 (0.07%)	1,369 (100%)
III	22 (1.0%)	785 (38.6%)	817 (40.1%)	379 (18.6%)	30 (1.4%)	0 (0%)	2,033 (100%)
IV	93 (2.6%)	953 (27.4%)	1,756 (50.6%)	607 (17.5%)	57 (1.6%)	0 (0%)	3,466 (100%)
V	59 (1.3%)	1,713 (38.1%)	1,854 (41.2%)	798 (17.7%)	71 (1.5%)	0 (0%)	4,495 (100%)
VI	67 (0.6%)	4,347 (39.3%)	4,759 (43.1%)	1,855 (16.8%)	7 (0.06%)	0 (0%)	11,035 (100%)
計	275 (1.1%)	8,614 (36.7%)	10,138 (43.2%)	4,178 (17.8%)	220 (0.9%)	4 (0.001%)	23,429 (100%)

名の約3%에 不過하므로 이 表는 大體로 集團VI의 炭礦의 生産勤勞者の 年齡別構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8의 集團 VI의 平均年齡은 約 32.0歲이고 表 9의 平均年齡은 約 31.5歲이다. 그러므로 生産勤勞者の 平均年齡이 勞職을 포함하는 勤勞者の 平均年齡보다도 若干 낮은 傾向을 가진다. 이러한 傾向은 生産勤勞者の 年齡別 構成比가 21~30歲, 31~40歲의 階級에서 각각 49.6%, 35.6%임에 反하여 勞職을 포함하는 勤勞者の 年齡別構成比는 20~29歲의 階級에서 39.3%, 30~39歲에서 43.1%로 되어 있는데서도 알 수가 있다.

表 9. 石公傘下 生産勤勞者の 年齡別 構成(1962. 12. 31)

	20歲以下	21~30歲	31~40歲	41~50歲	51~55歲	計
總 數	217	5,612	4,029	1,440	2	11,300*
構 成 比(%)	1.9	49.6	35.6	12.7	—	100
平均年齡=31.5歲						

*集團 VI의 6個事業場의 勤勞者 外에 石公本社の 그밖의 事業所의 勤勞者 340名을 포함함.
資料: 經營統計, 大韓石炭公社, 1963年 4月.

다음에는 坑內夫와 坑外夫로 나누어서 生産勤勞者の 年齡別構成을 알아보기 위하여 生産勤勞者 1,574名을 雇傭하고 있는 集團 VI의 D事業場의 경우를 알아보자. 1963年 3月 9日 現在의 D事業場의 坑內·坑外別 年齡構成을 보인 表 10에 의하면, 坑內夫의 平均年齡은 約 30.5歲이고, 그 57.4%가 最頻值階級인 21~30歲의 年齡區間에, 그 90% 以上이 21~40歲의 사이에 集中되어 있다. 이에 對하여 坑外夫의 平均年齡은 約 31.8歲이고, 그 43.1%가 21~30歲의 年齡區間에 있고, 그 約 83%가 21~40歲 사이에 集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坑內夫는 坑外夫보다도 平均年齡이 約 1.3歲 낮은 뿐 아니라, 坑內夫가 坑外夫보다도 이 平均年齡을 中心으로 하여 더 集中되어 있는 事實을 發見한다. 이러한 坑內夫와 坑外夫의 年齡構成의 差異는 坑內勞動이 坑外勞動보다도 勞動強度가

크다는데 基因한다고 생각된다. D 礦業所의 坑内外를 통한 平均年齡은 約 30.8 歲이다.

表 10. 生産勤勞者의 坑内·坑外別 年齡構成 : D 事業場(1963. 3. 9)

		20歲以下	21~30歲	31~40歲	41~50歲	51~55歲	計	平均年齡
坑 内 夫	實 數	5	675	404	91	0	1,175	30.5歲
	構成比(%)	0.4	57.4	34.3	7.7	0	100	
坑 外 夫	實 數	12	172	169	46	0	399	31.8歲
	構成比(%)	3.0	43.1	42.3	11.5	0	100	
計	實 數	17	847	573	137	0	1,574	30.8歲
	(構成比%)	1.0	53.8	36.4	8.7	0	100	

資料 : 現地調査에서 얻음.

(4) 韓國의 炭礦勤勞者의 教育程度는 어떤가? 表 11은 勞職을 포함하는 全炭礦勤勞者의 學力構成을 規模別로 表示한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全 規模를 통하여 國民學校 卒業者가 最多數로서 58.1%이고, 大學卒業者는 不過 2.1%임에 反하여 不就學者는 16.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規模別로 보면 不就學者의 比率는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增加하여 集團 IV에서 約 30%에 이르다가 集團 V, VI에서는 激減하여 13%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卒業者의 比率는 集團 I의 1.7%부터 차차 增加하여 集團 VI의 規模에서 2.6%에 이르고 있다. 그 理由는 中小規模의 炭礦에서는 經營管理的인 事務勞動이 그렇게 必要하지 않은데다가 그 生産이 技術을 要하는 複雜勞動보다도 單純勞動에 依存하는 程度가

表 11. 炭礦勤勞者의 學力別 構成(1962. 8. 31)

	不 就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I	86 (8.3%)	792(76.8%)	74 (7.1%)	61(5.9%)	18(1.7%)	1,031(100%)
II	244(17.8%)	880(64.2%)	146(10.6%)	84(6.1%)	15(1.0%)	1,369(")
III	371(18.2%)	1,127(55.4%)	300(14.7%)	211(10.3%)	24(1.1%)	2,033(")
IV	1,014(29.2%)	1,706(49.2%)	469(13.5%)	223(6.4%)	54(1.5%)	3,466(")
V	589(13.1%)	2,395(53.2%)	1,029(22.8%)	382(8.4%)	100(2.2%)	4,495(")
VI	1,501(13.6%)	6,720(60.8%)	1,537(13.9%)	985(8.9%)	292(2.6%)	11,035(")
計	3,805(16.2%)	13,620(58.1%)	3,555(15.1%)	1,946(8.3%)	503(2.1%)	23,429(")

表 12. 石公傘下 職員과 生産勤勞者의 學力比較(1962. 12. 31)

		不 就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職 員	實 數	0	212	296	318	515	1,341
	構成比(%)	0	3.0	14.4	20.6	88.3	10.6
生 産 勤 勞 者	實 數	1,323	6,921	1,762	1,226	68	11,300
	構成比(%)	100	97.0	85.6	79.4	11.7	89.4
計	實 數	1,323	7,133	2,058	1,544	583	12,641
	構成比(%)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 : 經營統計, 大韓石炭公社, 1963年 4月

크지만, 資本設備가 갖추어지고 있는 大規模炭礦에서는 不就學者의 單純勞動의 重要性이 全體의으로 減少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管理事務職 및 專問의技術者에 屬하는 大學卒業者에 대한 需要가 增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事務職과 生産勤勞者間의 教育程度를 比較하기 위하여, 規模가 가장 크고 近代化된 集團 VI의 炭礦들이 屬하고 있는 大韓石炭公社 全體勤勞者의 1962年 12月 31日 現在 勞職別學力을 알아 보자. 表 12에 의하면, 높은 教育水準일수록 職員이 차지하는 比率은 急激하게 커지고, 勤勞者의 比率은 적어진다. 그리고 絕對數에 있어서도 職員數는 增加하고, 不就學者를 除外한 生産勤勞者의 數는 減少하는 傾向을 가진다. 表 13은 生産勤勞者의 學力別 構成을 보인 것이다. 生産勤勞者의 約 73%가 不就學과 國卒이고, 中卒以上은 30% 未滿이라는 事實은 韓國炭礦勞動의 質的 低水準을 表示한 것이다.

表 13. 石公傘下의 生産勤勞者 學力別構成(1962, 12, 31)

	不就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實 數	1,323	6,921	1,762	1,226	68	11,300
構 成 比(%)	11.7	61.2	15.5	10.8	0.6	100

資料: 經營統計, 大韓石炭公社, 1963年 4月.

다음에는 坑內夫와 坑外夫의 學力差異를 알아보기 위하여 集團 VI의 D事業場의 경우를 보면, 不就學者의 比重은 坑內夫보다도 坑外夫에서 크고, 大學卒業者의 比重은 坑外夫보다도 坑內夫에서 더 크지만 그밖의 教育程度에 있어서는 坑內外를 통하여 비슷한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表 14. 坑內夫·坑外夫의 學力別構成: D 事業場(1963. 3. 9)

		不就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坑內夫	實 數	63	793	206	101	12	1175
	構 成 比(%)	5.3	67.4	17.5	8.5	1.0	100.0
坑外夫	實 數	28	258	72	39	2	399
	構 成 比(%)	7.0	64.6	18.0	9.7	0.5	100.0
計	實 數	91	1,051	278	140	14	1,574
	構 成 比(%)	5.7	66.7	17.6	8.8	0.8	100.0

資料: 現地調査에서 얻음

(5) 全體無煙炭産業의 勤勞者의 勤續年限에 관하여는 調査된 바가 없다. 集團 VI의 6個 事業場을 포함하는 大韓石炭公社 生産勤勞者의 1962年 12月 31日 現在의 勤續年限別 構成은 表 15에서 알 수 있다. 이 表에 의하여 計算한 炭礦勤勞者의 平均勤續年數는 3.6년에 不過하다. 그리고 1年 未滿의 經歷을 가진 勤勞者가 最大多數로서 全體人員의 33.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炭礦勞動에 熟練하기에 必要한 經驗年數가 大略 3年임을 考慮한다면 韓國炭礦勤勞者의 經歷期間이 너무나 짧은 現況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들의 勤續年數別 構成比를 切線圖表로 나타낸 圖表 1에 의하면 그 切線은 勤續年數가 많아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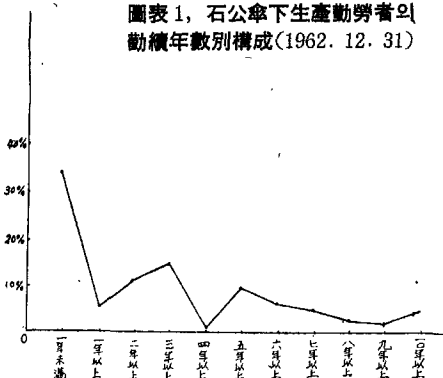
表 15. 石公傘下 生産勤勞者の 勤續年數別構成(1962. 12. 31)

	1年未滿	1年以上	2 "	3 "	4 "	5 "	6 "	7 "	8 "	9 "	10 "	計	平均勤續年數
實數	3,785	664	1,329	1,635	122	1,119	831	684	284	202	645	11,300	3.6年
構成比(%)	33.4	5.8	11.7	14.4	1.0	9.9	7.3	6.0	2.5	1.7	5.7	100	

資料：經營統計，大韓石炭公社，1953年 4月.

따라서 下落하는 傾向을 가지지만 특히 「1年以上」과 「4年以上」에서 깊은 고랑(trough)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1960년에 大韓石炭公社가 石炭礦夫의 勞動生産性에 關한 基本調査報告書(Preliminary Report on Productivity in Coal Miners, p. 11 fl.)에서

圖表 1. 石公傘下 生産勤勞者の 勤續年數別構成(1962. 12. 31)



이미指摘한 바와 같으며, 「1年以上」은 個人事由와 解雇에, 「4年以上」은 個人事由와 勞動災害 때문에 많은 脫落者를 내고 있다.

다음에 生産勤勞者를 坑內夫와 坑外夫로 나누어 그 勤續年數別 差異를 알기 위하여 D 礦業所의 경우를 例로 든다면,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坑內外 全勤勞者의 平均勤續年數는 3.3年인데, 坑內夫는 2.9年, 坑外夫는 4.4年으로서 坑內夫의 脫落率이 坑外夫의 경우보다

도 훨씬 尤甚한 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坑內夫와 坑外夫 어느 경우에도 「1年以上」勤續者와 「4年以上」勤續者가 激減하는 一般의 傾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表 16. 坑內夫·坑外夫의 勤續年數別構成：D 事業場(1962. 12. 31)

		1年未滿	1年以上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計	平均勤續年數
坑內夫	實數	460	55	138	250	2	104	58	41	29	16	3	19	1,175	2.9年
	構成比(%)	39.1	4.6	11.7	21.2	0.1	8.8	4.9	3.4	2.4	1.3	0.2	1.6	100	
坑外夫	實數	103	39	41	54	0	37	19	32	23	8	7	36	399	4.4年
	構成比(%)	25.8	9.7	10.2	13.5	0.0	9.2	4.7	8.0	5.7	2.0	1.7	9.0	100	
計	實數	563	94	179	304	2	141	77	73	52	24	10	55	1,574	3.3年
	構成比(%)	35.7	5.9	11.3	19.3	0.1	8.9	4.8	4.6	3.3	1.5	0.6	3.4	100	

資料：實地調査

(6) 全無煙炭礦에 勤務하는 總 勤勞者 23,429名을 常傭勤勞者와 日傭勤勞者의 雇傭形態別로 區分하면 表 16과 같다. 여기서 常傭勤勞者는 期間을 定하지 않고 雇傭된 勤勞者 또는 1個月 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雇傭된 勤勞者이며, 日傭勤勞者는 30日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雇傭되거나 또는 그날그날 雇傭되는 者를 말한다. 그러나 調査期日前 2個月間을 통하여 各月の 勤勞日數가 18日 以上으로 되는 日傭勤勞者나, 또는 調査期日前 6個月間을 通算하여 60日 以上 同一事業場에 雇傭된 日傭勤勞者는 常傭勤勞者에 包含하기로 한다.

表 16에 의하면 零細炭礦들(集團 I)의 日傭勤勞者는 常傭勤勞者에 比하여 매우 僅少하고, 大炭礦들(集團 VI)의 日傭勤勞者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이러한 極端的인 두가지 경우를 除外한 大部分의 炭礦들의 常傭勤勞者와 日傭勤勞者의 比率은 平均 5:1로서 常傭勤勞者 5名에 대하여 日傭勤勞者 1名의 꼴로 된다. 그리고 全 炭礦을 통하여는 常傭과 日傭의 比率은 11:1로 되며, 이 比率을 1957年의 日本 鑛業의 比率인 15:1에 比하면, 韓國의 炭礦에서는 日傭勤勞者의 比重이 日本의 경우 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表 16. 雇傭形態別 勤勞者數(1962. 8. 31)

	總 勤 勞 者 數	常 傭 勤 勞 者	日 傭 勤 勞 者	常傭과 日傭의 比率
I	1,031	973	58	16:1
II	1,369	1,205	164	7:1
III	2,033	1,793	240	7:1
IV	3,466	2,728	738	4:1
V	4,495	3,784	711	5:1
VI	11,035	11,025	10	1,103:1
計	23,429	21,508	1,921	11:1

다음에는 常傭勤勞者 21,508名의 職種別 構成을 알아 보기 위하여 炭礦從業員의 職種을 「礦員」, 「其他技術者」, 「生産從業員」, 「管理 및 事務員」 및 「其他」로 나눈다. 여기서 「礦員」이란 掘進夫, 採炭夫, 運搬夫, 保坑夫, 選炭夫는 勿論 그 밖에 採炭과 掘進에 直接 關聯되는 技術的 勤勞者를 包含하며, 「其他技術者」는 土建, 木材, 機械, 金屬, 火藥 등에 관한 特殊한 專門的 技術者와 技術管理職從事者를 말하고, 生産勤勞者는 上述한 「礦員」과 「其他技術者」의 두가지 職種을 綜合한 概念이다. 그리고 「管理 및 事務員」은 一般管理職從事者와 事務從事者들이며 「其他」라고 한 職種은 警備員, 雜役夫, 使喚 등의 單純勤勞者와 其他 分類不能의 勤勞者들을 포함한다.

以上과 같이 區分한 職種을 基準으로 하여 炭礦勤勞者의 絕對的 構成을 보인 것이 表 17이고, 그 相對的 構成을 보인 것이 表 18이다. 表 18에 의하면 生産勤勞者의 職種別 構成

表 17. 常傭勤勞者의 職種別構成(1962. 8. 31)

	礦 員 (A)	其他技術者 (B)	生産勤勞者 (A+B)	管理및事務員	其 他	計
I	855	49	904	65	4	973
II	1,035	94	1,129	53	23	1,205
III	1,568	136	1,704	84	5	1,793
IV	2,267	186	2,453	179	96	2,728
V	2,925	360	3,285	230	269	3,784
VI	7,393	2,284	9,677	478	870	11,025
計	16,043	3,109	19,152	1,089	1,267	21,508

表 18. 常備勤勞者の 職種別 構成比(%) (1962. 8. 31)

	礦 員 (A)	其他技術者 (B)	生産勤勞者 (A + B)	管理 및 事務員	其 他	計
I	88	5	93	7	0	100
II	86	8	94	4	2	100
III	87	8	95	5	0	100
IV	83	7	90	6	4	100
V	77	10	87	6	7	100
VI	67	21	88	4	8	100
計	75	15	89	5	6	100

比는 事業場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90% 以上の 水準에서 緩慢하게 增加하다가 集團 III에서 95%의 피크에 到達한 다음에 다시 下落하여 集團 V, VI에서 80%대를 維持하고 있는 反面, 管理 및 事務從事者는 約 5%線을 中心으로 하여 比較的 安定的이다. 生産勤勞者中에서 礦員의 構成比는 集團 I에서 88%이던 것이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차차 減少하여 集團 VI에서 67%를 차지하나, 技術從事者는 그 構成比가 차차 增加하여 集團 VI에서 21%로 된다. 이것은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機械設備가 增加하고, 따라서 礦員에 比하여 技術者의 需要가 相對的으로 增加되는 까닭이다. 技術者에 대한 礦員의 比率이 가장 큰 것은 最小規模인 集團 I의 18:1이고, 가장 적은 것은 最大規模인 集團 VI의 3:1이며 全規模를 통하여는 5:1이다. 韓國의 無煙炭礦의 全常備勤勞者 21,500名은 礦員 16,043名, 其他技術者 3,109名, (그러므로 生産勤勞者 19,152名), 管理 및 事務員 1,089名 其他 1,267名으로 나누어진다(表 17).

(7) 保健社會部の 調査票에 의하여는 韓國의 全無煙炭礦의 常備勤勞者의 坑內·坑外別 構成을 알수는 없었다. 다음 表 19는 各炭礦이 商工部に 提出한 1962年 8月分 生産月報를 基礎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이 結果에 의하면 同期間의 保健社會部の 資料에 의한 것보다도 事業場數가 4個, 勤勞者數가 2,347名 많아서 각각 99事業場, 25,776名인데 이 統計에 의하면 生産勤勞者 21,917名中 坑內夫는 16,994名, 坑外夫는 4,923名으로서 坑內夫가 生産勤勞者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77.5%이다. 이 數字는 1954年 3月現在の 日本炭礦業에 있어서

表 19. 生産量規模別 事業場 및 勤勞者의 構成(1962. 8. 31)

月 間 生産 量	事業場數	生 産 量 (噸)	坑 內 夫(A)		坑 外 夫(B)		生 産 勤 勞 者 (A + B)		勞 職 全 部
				%		%		%	
10,000噸以上	15	440,086	11,966	76.3	3,707	23.6	15,673	100	18,187
1,000~10,000噸	37	114,696	4,185	81.5	948	18.4	5,133	100	6,172
100~1,000噸	33	12,162	721	75.8	229	24.1	950	100	1,209
100噸以下	14	651	122	75.7	39	24.2	161	100	208
計	99	567,595	16,994	77.5	4,923	22.4	21,917	100	25,776

資料: 商工部に 提出한 各炭礦의 1962年 8月分 生産月報에서 作成함.

의 比率 68.86% (今井孝三著; 石炭, 日本의 産業시리즈, 有斐閣 1959,) 보다도 上廻하고 있다. 炭礦作業의 主體는 坑內夫이므로 坑內夫의 比率이 높을수록 能率의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採炭量確保에 汲汲한 나머지 炭礦條件에 알맞는 坑內·坑外의 勞務配置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保安上的 危險이 發生하고 勤勞者도 生活安定을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表 19는 事業場數와 勤勞者의 職種別人員을 事業場의 生産量을 基準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生産勤勞者에 대한 坑內夫의 構成比는 月生産量 1,000~10,000 톤의 規模에서는 約 82% 이나, 規模가 10,000 톤보다 많거나 1,000 톤以下인 경우에는 約 76%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構成比의 差異는 炭礦規模의 相異, 坑外作業(이틀테면 病院, 物資配給所, 娛樂施設, 機械·工具의 修理工場 등)의 直營 또는 外部發注의 程度 등에 의하여도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8) 다음에는 韓國의 炭礦從業員의 異動狀況을 考察하자. 表 20은 위에서 利用한 바있는 保健社會部의 全國事業場 勞動實態調查票에 의거하여, 1961年 9月 1日現在 및 1962年 3月 31日 現在의 人員, 그 사이 1年間의 原因別 入職者數 및 離職者數, 그리고 事業場數의 變動을 事業場規模別로 表示한 것이고, 表 21은 表 20에 立脚하여 勤勞者의 入職率, 離職率 및 勤勞者數와 事業場의 增減率을 表示한 것이다. 入職率(또는 離職率)은 一年동안 事業場에 새로 雇傭된(또는 事業場에서 離脫한) 勤勞者의 數가 全體雇傭量에 대하여 차지하는 比率로서 다음 算式으로 計算된다.

$$\text{入職率(離職率)} = \frac{\text{1年間入職者數(離職者數)}}{\text{前年末의 勤勞者數}} \times 100$$

表 20, 21에 의하면 1961年 9月 1일부터 1962年 8月 31일까지 1個年間に 全炭礦勤勞者의 純增加는 7,154名으로서 前年水準에 대한 純雇傭增加率은 +44이다. 그리고 이러한 變化는 同期間に 入職者數가 11,750名이고, 離職者數가 4,596名이어서 入職率과 離職率이 각각 +72.2, +28.2로 된 것에 기인 하는데 結局 韓國의 無煙炭礦業이 1962年 에너지産業으로서 活氣를 띤 證左라고 하겠다. 또한 事業場規模別로 보면, 零細規模인 集團 I은 다른

表 20. 韓國炭礦勤勞者의 異動狀況 및 事業場數의 變化 (1961, 9, 1~1962, 8, 31)

	前年人員 (1961, 9, 1)	入 職 者 數			離 職 者 數				現在人員 (1962, 8, 31)	調查事業場數	
		總 數	新 規	復職 및 轉 入	總 數	退 職	解 雇	轉職 및 休 職		1961, 9, 1	1962, 8, 31
I	353	875	875	—	197	148	29	10	1,031	16	39
II	1,055	593	585	8	279	261	12	6	1,369	14	20
III	1,203	1,120	1,110	10	290	216	46	28	2,033	11	14
IV	2,211	2,072	2,056	16	817	739	72	6	3,466	10	10
V	2,555	2,530	2,334	196	590	487	57	46	4,495	6	6
VI	8,898	4,560	4,134	426	2,423	1,582	273	568	11,035	6	6
計	16,275	11,750	11,094	656	4,596	3,433	489	664	23,429	63	95

表 21. 韓國炭礦勤勞者の 異動率과 事業場數의 變動率 (1961, 9, 1~1962, 8, 31)

	入 職 率 (A)	離 職 率 (B)	入 職 超 過 率 = 對 前 年 增 減 率 (A-B)	事 業 場 數 的 增 減 率
I	+247.9	+55.8	+192.1	+143.7
II	+ 56.2	+26.4	+ 29.8	+ 42.8
III	+ 93.1	+24.1	+ 69.0	+ 27.2
IV	+ 93.7	+37.0	+ 56.7	—
V	+ 99.0	+23.1	+ 75.9	—
VI	+ 51.2	+27.2	+ 24.0	—
計	+ 72.2	+28.2	+ 44.0	+ 50.7

規模에서 보다는도 最高의 離職率(+55.8)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入職超過率도 +192.1로 最高인 것은 入職者數가 거의 250%나 增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入職率은 同期間에 新規事業場數가 143.7% 增加한 것을 크게 反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集團 II, III에 속하는 小規模炭礦의 雇傭增加는 事業場數의 增加와 함께 既存事業場의 規模擴張에 기인하며, 集團 IV, V, VI의 雇傭增加는 同期間의 事業場數의 增加는 零이므로, 모두 既存事業場의 規模擴張에 기인한 것이다.

第 3 章 勞 動 時 間 과 作 業 內 容

(1) 勞動時間의 長短은 勞使雙方에 여러가지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雇傭量, 勞動條件, 生産性, 賃金水準 및 勤勞者의 生活水準등과 直接的으로 結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勤勞基準法은 ① 休憩時間을 除外한 基準勞動時間을 1日에 8時間, 1週日에 48時間으로 하되 (42條), ② 특히 地下作業 등 有害危險作業에 대하여는 1日 6時間, 1週日 36時間으로 定하고 (43條), ③ 每週平均 1回以上の 有給休日を 主도록 (45條) 制度化하고 있다. 그러므로 炭礦에서 地下作業을 하는 坑內夫의 基準時間은 1日 6時間에 該當한다. 그러나 勤勞基準法上의 勤勞時間은 正味勞動時間이므로 勤勞者가 入坑後 幕場에 到着하기까지의 途中時間은 勤勞時間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解釋되고 있다. 이것은 入坑時間부터 出坑時間까지를 勞動時間으로 다루는 外國의 常例와 다른 點이다.

(2) 1962年 8月中의 休日是 日曜日 4日, 國慶日 1日, 都合 5日이었으므로 同月間의 勤勞可能日數는 26日이다. 그런데 同期間의 韓國無煙炭事業場 常傭勤勞者의 1人當 月間勞動日數를 職種別로 表示한 表 22에 의하면, 全規模를 통하여 「管理 및 事務從事者」와 「其他」勤勞者의 月間日數는 각각 1人當 26.1日 및 26.2日로서 勤勞可能日數와 거의 一致하고, 「其他技術者」는 27.7日로서 相當히 上廻하고 있으나, 「礦員」들은 平均 24.0日로서 2日이나 下廻하고 있다. 常傭의 礦員들이 定해진 休日以外에 平均 2日씩 한달동안 쉬고 있는 事實은 그들의 賃金이 通常 能率給이기 때문에, 甚한 勞動強化가 있게 되고 따라서 肉體的 疲勞로

表 22. 常備勤勞者の 職種別 月間勤勞日數 (1962年 8月)

	礦 員	技 術 者	管 理 及 事 務 者 從 事 者	其 他
I	23.2	26.3	26.6	18.5
II	23.9	26.4	27.5	22.6
III	23.1	27.4	28.6	25.6
IV	24.5	26.4	27.0	28.1
V	25.7	26.4	24.2	25.4
VI	23.6	28.1	25.9	26.3
計	24.0	27.7	26.1	26.2

因한 不得已한 缺勤에 起因한다고 생각된다. 生産勤勞者の 勤勞日數를 規模別로 보면, 礦員은 集團 IV, V 의 中·大規模民間企業에서 높고, 技術者는 集團 VI 의 國營炭礦에서 높다. 이것은 中·大規模의 民營炭礦이 勞動集約的 生産을 하고 있는데 反하여, 國營炭礦에서는 資本設備가 어느 정도 近代化하여 技術者에 대한 需要가 增加하고 있으나 그 供給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韓國의 實情을 表示한다.

(3) 表 23은 各規模에 있어서의 1962年 8月中의 職種別 月間總勤勞時間을 그 月間總勤勞日數로 나누어서 1人當 日平均勤勞時間을 보인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全規模를 통한 「管理 및 事務從事者」와 「其他」勤勞者들은 大體로 8時間勤勞를 하고 있으나, 礦員들은 6.9時間, 「其他技術者」는 7.2時間으로 된다. 이와같이 實勤勞時間에 差異가 나는 것은 勤勞基準法의 規定에 의하여 6時間勤勞를 해야하는 坑內作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礦員」과 「其

表 23. 常備勤勞者の 日平均勤勞時間 (1962年 8月)

	礦 員	技 術 者	管 理 及 事 務 者 從 事 者	其 他
I	7.8	7.5	7.7	8.0
II	7.5	8.0	10.7	6.0
III	7.6	7.9	7.9	8.3
IV	7.5	7.8	7.8	8.0
V	7.1	7.8	7.6	7.3
VI	6.3	6.9	8.1	8.6
計	6.9	7.2	8.0	8.2

他技術者」의 範疇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國營炭礦인 集團 VI 에서 뚜렷하고, 그 밖의 民營炭礦에서는 地下作業에 대한 6時間勤勞制가 거의 實施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이 表에서 推測할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表 24에서도 알 수 있다. 이 表는 保健社會部의 1962年 5月現在 賃金實態調査表에 있는 無煙炭礦 23事業場을, 우리의 規模別集團 I, II, III, IV, V, VI 에 該當시켜 分類하고, 坑內直接夫(採炭夫, 掘進夫, 保坑夫)와 坑外夫인 選炭夫의 月間勤勞日數와 日平均勤勞時間을 表示한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坑內直接夫와 選炭夫의 勤勞日數는 各各

表 24. 坑內直接夫와 選炭夫의 勞動日數 및 勞動時間 (1962年 5月)

	集團 I, II, III에 속하는 14個 事業場		集團 IV, V에 속하는 4個 事業場		集團 VI에 속하는 5個 事業場		全體 23個 事業場	
	坑內直接夫	選炭夫	坑內直接夫	選炭夫	坑內直接夫	選炭夫	坑內直接夫	選炭夫
1個月 勞動日數	23.7	23.5	24.5	24.0	24.5	24.8	24.5	24.4
1日 勞動時間	7.7	7.9	8.6	8.5	6.8	8.8	7.1	8.6

平均 24.5日, 24.4日이고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若干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選炭夫의 勞動時間은 平均 8.6時間이고 規模에 따라서 上昇하고 있으나, 坑內直接夫의 勞動時間은 全規模平均 7.1時間이고, 小規模民營炭礦에서 7.7時間, 中·大規模의 民營炭礦에서 8.6時間, 大規模國營炭礦에서 6.8時間이다. 그러므로 民營炭礦의 坑內直接夫는 國營炭礦의 坑內直接夫보다도 훨씬 長時間의 勞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다음에는 大韓石炭公社가 1959—1960年의 6個月間에 걸쳐서 長省礦業所 黔川坑의 全直接夫를 調査하여 만든 石炭礦夫의 勞動生産性에 關한 基本調査報告書 (Preliminary Report on Productivity in Coal Miners, pp. 72-88)에 의하여 坑內夫가 職種이 相異함에 따라서 入坑해서 出坑하기까지의 時間을 어떻게 使用하고 있는 가를 보기로 한다. 이 報告書는 事例研究이기는 하나 典型的인 韓國無煙炭礦夫의 作業活動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炭礦의 勤勞者는 먼저 坑內作業을 하느냐 坑外作業을 하느냐에 따라서 坑內夫와 坑外夫로 大別되고, 坑內夫는 掘進夫, 採炭夫 및 保坑夫를 通稱하는 直接夫와 坑內에서 作業하는 運搬夫, 機械夫, 工作夫 및 雜夫를 通稱하는 間接夫로 區別된다. 그리고 坑外에서 일하는 選炭夫·運搬夫·機械夫·工作夫·電氣夫 및 雜夫를 통털어서 坑外夫라고 부른다. 坑內直接夫들은 作業에 따라서 組를 形成하고 이 組는 그 作業에 主導的으로 從事하는 先山夫와 數名의 補助夫로써 構成된다. 그러나 重要한 作業을 擔當하는 것은 先山夫이므로 다음의 作業內容도 先山夫를 基準으로 한 것이다.

[1] 掘進夫(Driller의 경우)

- 1. 坑道出入 50 分
- 2. Drill 組立 10 "
- 3. Drilling 100 "
- 4. 發破 30 "
- 5. Loader shovel 組立 10 "
- 6. Loader shovel 積載 및 運轉 140 "
- 7. 休息과 晝食 140 "

計 8時間 (實勞動時間 4.9時間)

[2] 掘進夫(Timber man의 경우)

- 1. 坑道出入 50 分

2. 坑木下積	5 "
3. Timber 作棟	20 "
4. Timber 梓立	60 "
5. Loader shovel 積載・運搬	140 "
6. 發破作業	65 "
7. 休息과 晝食	140 "

計 8 時間 (實勞動時間 4.9 時間)

[3] 採炭夫(採準의 경우)

1. 坑道出入	50 分
2. Raise 의 上下行	25 "
3. 쎅이질	20 "
4. Shovelling	30 "
5. 톱질	15 "
6. 도끼질	10 "
7. 入梓(6×6 尺 동발세워올리기)	40 "
8. 동발사이에 成木 및 빼기넣기	30 "
9. 坑木運搬	5 "
10. Trough 裝置(延長된 Raise 에 trough 裝置)	5 "
11. Bit holding	150 "
12. 休息과 晝食	100 "

計 8 時間 (實勞動時間 5.1 時間)

[4] 採炭夫(Caving 의 경우)

1. 坑道出入	50 "
2. Raise 上下行	20 "
3. Bit holding	50 "
4. 待避所構築	20 "
5. 發破作業	60 "
6. 流炭作業(古木除去, 큰 炭塊破碎)	180 "
7. 休息과 晝食	100 "

計 8 時間 (實勞動時間 5.2 時間)

[5] 保坑夫

1. 坑道出入	50 分
2. 岩石切取(쎅이, 삼利用)	60 "
3. 發破	20 "
4. 坑木車맡기	15 "
5. 坑木積載	5 "
6. 坑木運搬(坑內에서 二名이 어깨로 運搬)	5 "
7. 톱질	15 "
8. 도끼질	10 "
9. 톱질補助	10 "
10. 梓組立	15 "

11. 成木組立	15 "
12. 썬기 넣기	10 "
13. 坑道整備	15 "
14. 硬石積載	30 "
15. 坑木運搬(坑外)	40 "
16. 休息과 晝食	150 "

計 8 時間 (實勞動時間 4.7 時間)

[6] 運炭夫

1. 坑道出入	50 分
2. 斜坑에서 實·空車入換	30 "
3. 炭積載	100 "
4. 幕場·斜坑間運搬	150 "
5. 運行支障除去	30 "
6. 坑木下積(初入坑時)	10 "
7. 空車待機	30 "
8. 脫線回復作業	30 "
9. 休息과 晝食	50 "

計 8 時間(實勞動時間 6.3 時間)

第 4 章 勞 動 賃 金

(1) 韓國의 無煙炭礦의 賃金體系를 보면, 一般的으로 管理 및 事務員은 月給制를 쓰고 있으나 生産勤勞者에 대하여는 都給制 乃至 日給制이다. 그리고 특히 生産勤勞者中에서 坑內 直接夫는 거의 都給制로서, 그 都給單價는 各坑마다 掘進의 進度, 出炭量 또는 동발數 등으로 定해진 標準作業量을 基準으로 하여 算出된다. 그리고 이 都給單價는 그 作業單位組의 構成員들인 先山夫와 補助夫間에 不文律로 定해진 一定한 比率(이를테면 5:4)을 따라서 分配되고 있다.

(2) 表 25는 礦員, 技術者, 管理 및 事務員, 그리고 其他勤勞者에 대한 一日平均賃金を 規模別로 나타낸 것이다. 1962年 8月을 基準으로 하여 作成한 이 表에 의하면, 賃金水準은

表 25. 韓國無煙炭礦의 規模別·職種別 賃金(1962年 8月) 單位: 원

集 團	礦 員	技 術 者	管理 및 事務員	其 他 勤 勞 者
I	121.63	156.32	189.73	95.68
II	135.93	136.05	177.72	138.20
III	171.63	181.35	202.89	167.97
IV	148.01	200.60	194.53	139.89
V	215.21	330.21	340.19	205.09
VI	275.87	283.12	430.52	238.43
平 均	218.95	273.39	323.87	221.37

職種別로 相異하여, 全規模를 통한 1日平均賃金은 礦員 219.95원, 技術者 273.39원, 管理 및 事務員 323.87원, 其他勤勞者 221.37원으로 된다.

그리고 同一職種에 있어서도 以上の 賃金水準을 中心으로 하여 規模別로 커다란 格差가 있다. 즉 礦員賃金은 最低 121.63원(集團 I)에서 最高 275.87원(集團 VI)까지, 技術者の 賃金은 136.05원(集團 II)에서 330.31원(集團 V)까지, 管理 및 事務員은 177.72원(集團 II)에서 430.52원까지, 그리고 其他勤勞者은 95.68원(集團 I)에서 238.43원(集團 VI)까지의 範圍를 가진다. 一般적으로 同一한 規模에서는 管理 및 事務職의 賃금이 다른 職種보다도 높고, 同一한 職種에서는 大規模의 炭礦일수록 賃금이 높아지는 傾向이 있다.

前者의 傾向은 各集團의 礦員의 平均賃金들을 100으로 하여 다른 職種の 賃金の 格差를 나타내는 表 26에서 알 수 있고, 後者の 傾向은 集團 VI의 各職種の 賃金水準들을 100으로 하여 規模別賃金の 格差를 나타내는 表 27에서 볼 수 있다. 表 26의 最下行에서 보는 바와

表 26. 各規模의 職種別賃金格差(1962年 8月)

集 團	礦 員	技 術 者	管理 및 事務員	其 他 勤 勞 者
I	100	128.5	156.0	7.9
II	100	100.1	130.7	101.7
III	100	105.7	118.2	97.9
IV	100	135.5	131.4	94.5
V	100	153.5	158.1	95.3
VI	100	102.6	156.1	86.4
平 均	100	124.8	147.9	101.1

表 27. 各職種の 規模別賃金格差(1962年 8月)

集 團	礦 員	技 術 者	管理 및 事務員	其 他 勤 勞 者
I	44.1	55.2	44.1	4.0
II	49.3	48.1	41.3	58.0
III	62.2	64.1	47.1	70.4
IV	53.7	70.9	45.2	58.7
V	78.0	116.6	79.0	86.0
VI	100	100	100	100
平 均	79.3	96.5	75.2	92.8

같이 礦員의 賃金과 其他勤勞者의 賃金은 비슷하나, 技術者는 平均 約 25%, 管理 및 事務員은 約 50%정도 礦員의 賃金水準을 上廻하고 있다. 그리고 表 27에 의하면 小規模炭礦의 賃金水準은 大規模炭礦(集團 VI)의 賃金水準의 約 50%에 不遇하는 格差가 있다. 職種別로 作業內容이 다르기 때문에 職種別賃金格差는 어느 정도 不可避하다고 하더라도 同一한 作業에 대한 賃金の 規模別格差가 50%나 된다는 것은 特히 後進國 韓國의 賃金構造의 特徵이다.

先進國에서는 熟練·半熟練·不熟練에 따라서 職種別로 最低賃金率이 定해져 있어서 그것

이賃金時勢로 되어 있다. 즉賃金은企業別로勤續年限이나年功으로決定되는 것이 아니라,企業의테두리를벗어난職種이나熟練度에의하여決定되는것이다.그러나韓國의賃金은同一作業同一賃金の原則에의하여決定된다는것보다도企業의自律的인行動에의하여決定되므로企業을超越한産業別賃金率로서의賃金時勢는事實上存在할수없는것이다.

勿論企業의規模에의한賃金格差는결코韓國에만있는現象은아니다.大企業은生産規模가크고,生産技術이優秀하고,市場을獨占하는것등에의하여內部經濟를거두고,中小企業을壓倒하여超正常利潤을獲得할수가있으며,勞動組合은賃金を多少라도더올릴수있는立場에있다.그러나歐美諸國에서는①最低賃金制가實施되고있고②社會保障制度가確立되어있으며③強力한勞動組合이産業別로組織되어있기때문에,職種에따른賃金率이企業을超越하여共通의으로存在하게된다.實際의賃金收得은이賃金率을基礎로하여企業別로相異하지만格差는韓國에比하여그렇게甚한것이아니다.즉規模1,000名以上인事業場의1人當賃金を100으로하면,9人以下의從業員을가진小企業의賃金은1954년에西獨에서81.7,美國에서63이고,50名以下의小規模企業의賃金은英國에서82.5이다.그러나1962年8月現在로韓國의50名以下의小規模炭礦의賃金은規模1,000名以上의大炭礦의賃金の44%(礦員)에不過한實情이다.中小規模의事業場에서의1日勞動時間이大規事業場에서보다도큰것을생각하면(表21),적은規模의炭礦에雇傭되고있는勤勞者들은過長勞動에過少賃金を받고있는것이다.

韓國의無煙炭礦業의規模別賃金格差가특히큰가닭은,첫째로規模에따라서生産性이相異하고,둘째로過剩人口,勞動組合의未發運,最低賃金制의缺如및社會保障制度의未確立등으로,失業者들이失業保險으로生計를維持하면서求職을하는顯在的失業者로되지 못하고,아무리낮은賃金を만더라도일에매달릴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3) 韓國의無煙炭礦의主要한職種인掘進夫,保坑夫,採炭夫(以上坑內直接夫),運搬夫(坑內間接夫)및選炭夫(坑外夫)의賃金を알아보기위하여保健社會部가調査한1962年5

表 28. 炭礦勞動의 職種別賃金(1962年 5月)

	I~III (事業場數 14)		IV~V (事業場數 4)		VI (事業場數 5)				全體 平均	
	賃 金	指 數	賃 金	指 數	熟 練		未 練 熟		賃 金	指 數
					賃 金	指 數	賃 金	指 數		
掘 進 夫	132.40	99	271.92	113	352.68	121	299.53	122	282.95	114
保 坑 夫	146.45	110	186.90	77	337.65	115	291.28	118	256.90	104
採 炭 夫	133.63	100	241.30	100	292.60	100	245.92	100	247.58	100
運 搬 夫	110.37	85	216.67	90	188.65	64	164.32	67	191.16	77
選 炭 夫	106.33	80	98.14	41	165.01	56	126.71	52	120.60	49
坑 內 直 接 夫*	136.00	102	232.20	96	297.44	102	258.12	105	254.76	103

* 坑內直接夫는 掘進夫·保坑夫 및 採炭夫를 포함 한 것임.

月末現在 賃金實態調査票를 利用하여 表 28 을 作成하였다,

이 表에 의하면 全規模를 통하여 日平均賃金은 掘進夫 282.95원, 保坑夫 256.90원, 採炭夫 247.58원, 運搬夫 191.16원, 選炭夫 120.60원이며, 掘坑夫, 保坑夫 및 採炭夫를 포함하는 坑內直接夫의 平均賃金은 254.76원이다. 그리고 어떤 職種の 賃金도 事業場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낮은 賃金에서 높은 賃金으로 上昇하는 傾向을 가진다. 그리고 表 28의 右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특히 大規模事業場인 集團Ⅵ의 未熟練에 屬하는 여러 職種の 賃金水準이 다른 規模의 各賃金水準을 凌駕하고 있는 事實은 우리나라의 礦夫들을 賃金の 差異에 의하여 熟練·未熟練으로 區別하기조차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4) 全事業場을 平均한 礦員賃金の 職種間 格差를 보면 採炭夫賃金を 100으로 할 때 掘進夫는 114로서 14포인트 높고 그 다음이 保坑夫의 104로서 4포인트 높으나, 運搬夫의 賃金은 77로서 23포인트 낮다. 그리고 坑外夫인 選炭夫는 49로서 採炭夫賃金の 50%에도 未達이다. (表 28의 右端). 規模別로 볼 때, 坑內直接夫의 職種別 賃金格差가 가장 甚한 것은 集團Ⅵ에서 이고(121-64=57), 그 다음이 集團Ⅶ(113-77=36), 그리고 集團Ⅰ-Ⅲ(110-85=25)의 順序이다. 規模가 적은 集團Ⅰ-Ⅲ에서 坑內直接夫間의 職種別 賃金格差가 가장 적은 것은 小規模炭礦에서는 職種間의 分業이 明確하게 行하여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作業에서나 賃金水準이 生存費水準에서 決定되고 있음을 表示하는 것이다.

(5) 表 29는 坑內外別 賃金水準과 그 格差를 특수한 炭礦 3個를 標本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事業場A는 江原道 黃池에 있는 T礦業所의 德大制로 運營하는 一片坑(1963年現在 勤勞者 76名)이며 群小炭礦을 代表하고 있고, 事業場B는 民營炭礦의 模範이라고 할 수 있는 勤勞者 905名(1962年)의 K炭礦이고, C는 國營炭礦의 하나인 勤勞者 1,574名(1962年)

表 29. 坑內外別 日 平均 賃 金

	人員數	坑內直接夫		坑內夫		坑外夫		坑內外平均
		원	%	원	%	원	%	
A 炭 礦	76	134	99.2	135	100	150	111.1	138
B 炭 礦	905	397	102.0	389	100	241	61.9	339
C 炭 礦	1,574	306	103.3	296	100	197	66.5	263

의 大規模炭礦이다. A에 관한 數字는 1963年 3月 1日부터 6日까지 1週日間의 工程表에서 直接 만든 것이고, B의 數字는 1963年 2月, C의 數字는 1963年 1月の 數字이기 때문에 三者를 同一時點에서 엄밀히 比較한 것은 아니나, 大體로 말하면, 代表的인 民營炭礦의 現物給與를 포함한 賃金水準은 坑內外平均 339 원으로서 群小民營炭礦의 水準(138원)의 2.4배이고, 國營炭礦의 賃金水準(263원)의 1.3 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B炭礦이나 C炭礦과 같은 大規模炭礦에 있어서는 坑內外夫賃金이 坑內夫賃金보다 낮고 그 70%未滿인데 反하여 A炭礦과 같은 零細炭礦에서는 反對로 坑外夫賃金이 坑內夫賃金보다도 若干 上廻하

고 있다(110%). 그럼에도不拘하고 A 炭礦의 坑外夫賃금이 B, C 炭礦에 比하여 훨씬 낮은 것을 생각한다면, A 炭礦의 礦員賃금은 坑内外를 莫論하고 最低賃金水準에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다음에는 1960년부터 1963년에 이르는 동안의 B 炭礦과 C 炭礦의 坑內夫 坑外夫의 賃金趨勢를 알아보기로 한다. 表 30은 1960年 全年을 基準으로한 B 炭礦의 年度別 賃金指數를 나타낸 것이고, 表 31은 1960年 1月賃金を 基準으로 한 C 炭礦의 賃金指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表 29에 의하면, B 炭礦의 賃金水準은 C 炭礦의 賃金水準의 1.3배이었다. 그러나

表 30. B 炭 礦 의 賃 金 趨 勢

	坑 內 夫		坑 外 夫		坑 內 外 平 均	
	實 數	指 數	實 數	指 數	實 數	指 數
1960年	347원	100	204원	100	283원	100
1961	379	109	232	114	319	113
1962	385	111	237	116	325	115
1963(2月)	389	112	241	118	339	120

그 上昇率을 比較하면, B 炭礦에서는 1960년부터 1963年 2月까지의 사이에 全體적으로 20%增加한데 지나지 않으나(表30), C 炭礦의 賃금은 1960年 1月부터 1963年 1月까지의 사이에 60%나 增加하였음을 알 수 있다(表31). 그리고 賃金上昇率을 坑內夫와 坑外夫로 나누어 보면, B 炭礦에서는 坑內夫의 賃金上昇率(112)보다도 坑外夫의 上昇率(118)이 더 큰데 反하여, C 炭礦에서는 坑內夫의 그것(163) 坑外夫의 그것보다도(150) 더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1. C 炭 礦 의 賃 金 趨 勢

	坑 內 夫		坑 外 夫		坑 內 外 平 均	
	實 數	指 數	實 數	指 數	實 數	指 數
1960年 1月	178원	100	124원	100	164원	100
1961年 1月	191	107	133	107	172	105
1962年 1月	258	145	148	119	223	136
1963年 1月	290	163	186	150	263	160

第 5 章 炭 礦 勞 動 의 生 產 性, 災 害 및 厚 生

(1) 1962年 8月의 無煙炭의 勞動生産性을 職種別·生産量規模別로 나타낸 表 32는 各事業場이 商工部에 提出한 生産月報를 基礎로 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서는 勞動生産性으로서 坑內夫, 生産從業員 및 勞職全體別로 그 月間 平均 物的 生産性(Monthly average physical productivity)을 計算하였다. 月間 平均 物的 生産性으로서의 勞動生産性이란 勞動者 1人當 1個月間 生産하는 實物的인 生産량을 意味한다. 全規模를 통한 坑內夫의 生産性은 33.4M/T, 生

産從業員의 生産性은 25.9 M/T 이고, 勞職을 포함한 生産性은 22.0 M/T 이다. 그리고 月生産量이 100 M/T 以下인 小規模炭礦을 除外한다면, 모든 職種の 生産性은 生産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上昇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事業場의 規模가 클수록 要素賦存의 狀態가 良好

表 32. 炭礦勞動의 生産性(1962年 8月)

月間生産規模	坑 內 夫		生産勤勞者		勞 職 全 體	
	生産性	比 率	生産性	比 率	生産性	比 率
	M/T	%	M/T	%	M/T	%
10,000M/T以上	36.7	100	28.0	100	24.2	100
1,000~10,000	27.4	75.2	22.3	79.6	18.5	76.4
100~1,000	16.8	45.7	12.8	45.7	10.0	41.3
100M/T以下	53.3	145.2	40.4	144.2	31.2	128.9
全 規 模	33.4	—	25.9	—	22.0	—

하고 資本設備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表에 의하면 月間生産量이 100M/T 以下の 規模를 가진 群小炭礦의 勞動生産性이 月間生産量 10,000M/T 以上の 大炭礦의 勞動生産性の 거의 30%를 超過하는 奇異한 結果를 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群小炭礦에 있어서는 勞動者들이 流動的이어서 實動勤勞者數의 正確한 把握이 不可能하고 生産量이 當局에 誇張報告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全的으로 信賴할 수 없는 數字이다.

(2) 韓國炭礦의 災害發生의 頻度와 強度는 他産業에 比할 바가 아니다. 캄캄하고 좁은 坑內에서 몇 萬톤일지도 모를 地壓을 받으면서, 高溫, 多濕, 炭塵이 飛散하는 더러운 空氣와 시끄러운 騒音속에서, 都給賃金이기 때문에 한덩어리라도 더 파고, 한자라도 더 나아가려는 炭礦夫에게 災害가 頻繁히 隨伴하는 것은 避치 못할 現實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營炭礦인 集團Ⅵ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韓國炭礦의 勞動災害狀況은 把握하기가 困難하다.

表 33은 集團Ⅵ에 屬하는 6個炭礦의 1962年의 原因別·傷度別死傷者數를 坑內·坑外別로 보인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同年間의 死傷者總數는 坑內外를 通하여 1,530名이고 이 中에서 死傷者數는 坑內 30名, 坑外 1名으로 計 31名이다. 가장 많은 死傷者數를 낸 事故

表 33. 集團Ⅵ의 原因別·傷度別 勞動災害件數 (1962年)

	坑 內							坑 外					坑 內 外									
	落 磬	發 破	개 入	炭 塵	出 水	炭 車	其 他	計	炭 車	感 電	機 械	自 動 車	其 他	計	落 磬	發 破	개 入	出 水	炭 車	機 械	其 他	計
輕 傷	299	18	7	17	8	300	424	1,073	85	119	19	150	274	299	18	7	8	385	19	611	1,347	
重 傷	45	10	0	3	0	36	38	132	5	0	1	4	10	20	45	10	0	0	41	1	55	152
死 亡	20	5	0	0	1	1	3	30	0	0	0	0	1	1	20	5	0	1	1	0	4	31
計	364	33	7	20	9	337	465	1,235	90	120	23	161	295	364	33	7	9	427	20	670	1,530	

石炭 16號 大韓石炭公社, 1963年 6月, p. 119 參照.

는 落磐인데, 그것은 적게는 2乃至 3kg의 浮石落下로 부터 크게는 幕場全體가 完全히 꺼져버리는 大崩落에 이르기까지 千差萬別이다. 落磐에 의한 災害와 아울러 많이 發生하는 것은 炭車에 의한 事故이다. 이러한 事故는 좁은 坑道에서 脫線한 炭車を 避할 場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側壁에 끼이거나, 傾斜진 坑道에서 連結핀의 切斷, 索條(wire rope)의 切斷등으로 急降下하는 炭車에 ぶ딛히거나 하여서 發生한다.

死傷者數의 年度別推移를 나타낸 表 34에 의하면, 死亡者數는 1962年의 31名은 1961年의 47名보다는 적은 數이나, 1959年의 23名보다는 높은 水準에 있다. 그러나 重傷者數와 輕傷者數에 있어서는 1960年이 피크 이었고, 1962년에는 1959年보다도 오히려 낮은 水準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死傷者總數에 있어서는 1962年이 亦是 最低水準에 있다.

表 34. 集團Ⅵ의 災害件數의 年度別總移

	死 亡 者	重 傷 者	輕 傷 者	死 傷 者 總 數
1959年	23	496	1,600	2,119
1960 "	38	480	1,941	2,459
1961 "	47	199	1,869	2,115
1962 "	31	151	1,348	1,530

經營統計, 大韓石炭公社, 1963年 4月, p. 63 參照.

表 34의 災害件數의 年度別推移는 各年度에 있어서의 總稼動時間이나 生産量의 相違를 無視하고 比較한 것이다. 그러나 各勞動者가 災害에 ぶ딛히는 危險의 程度를 表示할 뿐 아니라, 災害의 國際的 또는 時期的 比較를 容易하게 하는 한가지 指標가 災害率이다. 勞動災害率에는 頻度率과 強度率의 2種이 있는데, 資料의 不備로 頻度率만 表示한 것이 表 35이다. 즉 表 35는 勞動時間 百萬時間當 災害發生率과, 生産量 百萬噸當 災害發生率을 年度別로 나타낸 것인데, 이 表의 災害發生率은 每年 減少하였고, 1962년에는 百萬勞動時間當 約 57件, 生産量 百萬噸當 約 433件의 災害가 發生한 比率이다.

韓國炭礦의 災害頻度率을 日本의 炭礦의 災害頻度率과 比較하면 表 36과 같이 死亡率에서 韓國이 더 높다. 韓國의 數字는 集團Ⅵ에 屬하는 6個炭礦에 局限된데 反하여 日本은 全

表 35. 集團Ⅵ의 災害頻度率의 總移

	稼動百萬時間當	生産百萬噸當		稼動百萬時間當	生産百萬噸當
1959年	104.13	980.13	1961年	94.76	728.22
1960 "	110.31	955.71	1962 "	56.81	432.81

經營統計, 大韓石炭公社, 1963年 4月

炭礦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일 韓國의 群小炭礦의 死亡者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格差는 실제로 보다 더 크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韓國은 四週以上の 加療를 要하는 負傷者를 重傷者로 取扱하고, 日本은 二週以上の 加療를 要하는 負傷을 重傷으로 取扱하는 慣例이기 때문에,

表 36. 災 害 頻 度 率 의 國 際 比 較

	韓 國 (集團Ⅵ)			日 本 (全炭礦)		
	死 亡	重 傷	計	死 亡	重 傷	計
1960	1.79	21.51	23.30	0.90	35.30	36.20
1961	2.19	8.91	10.10	1.02	42.25	43.27
1962	1.15	5.61	6.76	0.98	42.85	43.83

石炭, 16號 大韓石炭公社, 1963年 6月.

重傷者는 韓國에서는 四週以上, 日本에서는 二週以上 加療를 要하는 負傷者를 말함.

韓國과 日本의 重傷者의 頻度率을 表 36으로 直接 比較할 수는 없다.

(3) 勞動時間, 勞動賃金과 아울러 炭礦勤勞者의 生活에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은 諸般 厚生施設이다. 1962年 8月 31日現在 事業場 95個, 이 곳에서 일하는 23,429名의 炭礦勤勞者에 대한 厚生施設을 가진 事業場의 規模別分布를 보인 것이 表 37이다. 이 表에 의하면, 教育施設을 가진 事業場數 5(13棟, 1,414坪), 勤勞者의 寄宿舍(合宿所)를 가진 事業

表 37. 厚生施設을 갖춘 事業場의 規模別分布(1962, 8, 31)

	事業場數	教育施設	寄 宿 舍	舍 宅	病 院 (附 屬)	病 院 (指 定)	體 育 娛 樂 施 設	其他厚生 施 設
I	39	0	6	6	0	2	0	1
II	20	0	5	8	0	1	2	3
III	14	0	4	8	0	2	2	4
IV	10	1	8	7	2	3	2	3
V	6	1	5	6	3	1	4	4
VI	6	3	5	6	6	0	2	5
計	95	5	33	41	11	9	12	20
棟 數 計	—	13	74	2,065	25	11	16	63
延 建 坪 計	—	1,414	2,941	46,590	1,442	355	2,172	1,825

場數 33(74棟, 2,941坪), 舍宅을 가진 事業場數 41(2,065棟, 46,590坪), 附屬病院을 가진 事業場數 11(25棟, 1,442坪), 指定病院을 가진 事業場數 9(11棟, 355坪), 體育娛樂施設을 가진 事業場數 12(16個所, 2,172坪), 其他厚生施設(沐浴場·理髮所等)을 가진 事業場數 20(63個所, 1,825坪) 등으로서 數的인 면에서나 量的인 면에서 보잘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厚生施設을 가진 事業場의 規模別分布를 보면 그 大部分이 大規模事業場에 集中되고 있어서 小規模炭礦의 勤勞者들은 그러한 惠澤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教授
 서울大學校商科大學附屬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